



2021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총 제193차 -

- 【개최일시】** 2021년 12월 21일(화) 16:00
- 【개최장소】** 서울대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이사 8명(정원 9명) / 감사 2명(정원 2명)
- 출석이사: Fr. 황경원, Fr. 김성훈, 오혜경, 심점섭, 전재희, 정태호, 김명근, 김영주 (8명)
- 출석감사: Fr. 김한석, 이영규 (2명)
- 배 석: Fr. 하성용(사회사목국 부국장), Fr. 조용철(법인 부회장)
법인사무국 담당(관) 8명

【의안상정】

- 제1호 의안** 법인 「취업규칙」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 제2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의 건
- 제3호 의안** 법인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안) 승인 요청의 건
- 제4호 의안** 법인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대출」(안) 승인 요청의 건
- 제5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 추인 요청의 건
- 제6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1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 제7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2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 제8호 의안**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2014년 및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신청(안) 승인 요청의 건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

- 보고 1. 법인 산하 수탁시설 관련 보고
- [종합복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방과후어린이집 사업 종결 건

【폐회】

□ 개회 정족수 보고 및 개회 선언

의장은 오후 4시 00분 상임이사의 정족수 보고를 확인(다자간 메신저 대화창으로 확인) 후, 시작기도를 생략하고 정관 제19조 제2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한다.

□ 의장 황경원 인사 말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도중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의 발생, 백신돌파감염 등으로 인한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금번 제4차 임시이사회회의의 개최 방식을 예정된 대면이 아닌 비대면 형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임원진분들께 양해를 구하다.

→ [비대면 회의 개최 근거]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참작하여 비대면-다자간 메신저 활용을 통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개최함.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020. 11.)-「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등에 관한 안내」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 12. 3.)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강화 등 관련 향후 4주간 시행 (적용기간:2021. 12. 6. (월)~2022. 1. 2. (일)/4주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배포일:2021. 12. 3.)」 발췌

「코로나19」 비상 시국으로 정부의 방역정책 협조와 나아가 임원분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하는 법인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4차 임시이사회회의에서는 2022년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총8건의 상정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리로 각 의안에 대한 임원분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전차 이사회회의록 확인

◎ 의장 황경원 : 법인 부회장신부님께 전차 회의록 낭독(보고) 청하다.

◎ 부회장 조용철 : 전차 회의록 자료를 낭독(보고)하다.

◎ 의장 황경원 : 전차 회의록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다.

[의장은 임원들의 의견 확인 후, 전차회의록을 확정하다.]

의안심의

■ 제1호 의안 : 법인 「취업규칙」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1호 의안인 법인 「취업규칙」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1호 의안인 법인 「취업규칙」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안 관련- 법인 정태호 이사님(법학 교수)과 김영주이사님(공인노무사) 검토·자문 반영 완료)

▶ 개정 사유

1. 지난 2010년 인사복무규정을 제정한 이후, 지난 3회(2012년, 2015년, 2018년)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2.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연장근로의 제한, 휴일, 연차휴가, 임신부 보호 및 육아시간, 직장내 괴롭힘 등)을 반영하고
3. 육아기근무시간 단축 등 모성 보호와 가족돌봄 휴직이나 휴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직원의 복무, 근무조건 등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 개정(안)의 각 영역별 주요 내용

영역별	개정(안) 주요 내용
1. 인사규정	1) 「민법」상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제17조(채용결격사유) 1호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반영 : 제43조(육아휴직) 「임신 중 여성직원」 추가, 육아휴직 신청자의 근속기간 축소 (1년 미만→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기간 해고제한, 육아휴직자의 복직시 기존 근로조건 유지 등 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의4 반영 : 제43조의 1(육아휴직의 사용형태) 임신중인 여성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횟수에서 제외 4)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반영 : 제44조(직원의 가족돌봄휴직) 도입
2. 복무규정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반영 : 제13조(근무시간) 토요일무급휴무제 규정, 법인의 지휘·감독하의 대기시간 등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반영 : 제13조의2(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13조의3(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중 근무조건 등) 신설 3)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반영 : 제13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13조의5(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조건 등) 신설 4)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같은 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반영 : 제15조(연장, 야간, 휴일근무), 제15조 2(야간근무와 휴일근무의 제한) 5)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반영 : 제25조(연차휴가) 근속기간 2년미만 직원의 휴가권보장, 휴가소멸기간(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를 추가)

법인 「취업규칙」 개정(안)

영역별	개정(안) 주요 내용
	<p>6)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같은 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반영 제25조의 1(연차휴가의 사용), 제25조의 2(유급휴가의 대체) 신설</p> <p>7)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반영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추가</p> <p>8)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 보호), 같은 법 제75조(육아시간) 반영 : 제30조(임산부 보호 및 육아시간) 임산부보호관련 내용을 상세히 규정</p> <p>9)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반영 : 제31조의 2(가족돌봄휴가) 신설</p> <p>10)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관련 규정 반영 : 제5절을 신설하여 제3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이하 신설</p>

※ 이하, 법인 「취업규칙」 개정(안) 본문, 4면~20면 참조

「인사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p>제3장 채용</p> <p>제17조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 채용 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p> <p>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자</p> <p>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p> <p>5.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p> <p>6. 징계에 의한 해고처분 및 면직처분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7.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8.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p> <p>9. 본 법인의 정관 제1조의 정신과 이념을 거부하는 자</p>	<p>(좌동)</p> <p>제17조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 채용 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p> <p>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9. 변동없음.</p>	<p>[변경]</p> <p>■ 용어변경 (「민법」상 개정 반영)</p> <p>⇒ 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인사규정」 개정(안)

<p>제7장 휴직 및 복직</p>	<p>(좌동)</p>	
<p>제43조 (육아휴직) ①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p> <p>③ 법인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 기타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한다.</p>	<p>제43조 (육아휴직) ① 법인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삭제 <p>② 변동없음.</p> <p>③ 법인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법인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p> <p>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 기타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한다.</p>	<p>[추가·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 제 10조 (육아휴직) 2019. 8. 27. 개정반영 ⇒ 제1항 본문 용어추가 (임신중인 여성직원) ⇒ 제1항 1호 변경 계속근로기간을 1년 미만→6개월 미만으로 축소 ⇒ 제3항, 제4항 추가 ⇒ 조 변경 제4항, 제5항→제5항, 제6항
<p>신설</p>	<p>제43 의1 (육아휴직의 사용형태) 직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제 19조의4(육아휴직의 사용형태) 2021. 5. 18. 개정반영
<p>제44조 (가족간호 청원휴직)</p> <p>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수술 또는 입원한 경우 2. 수술 또는 입원이후 그 후유증으로 간병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경우 	<p>제44조 (직원의 가족돌봄휴직)</p> <p>① 법인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p>	<p>[신설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돌봄 등을 위한 지원) 2019. 8. 27. 개정반영 ⇒ 조 명칭변경 가족간호청원휴직→가족돌봄휴직으로 변경

「인사규정」 개정(안)

<p>② 제1항에 의해 휴직하는 경우 무급으로 하며 최장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p>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④ 법인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p> <p>⑥ 법인은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⑦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

「복무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제2장 제1절 근무시간 등	(좌동)	
<p>제13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 다음과 같다.</p> <p>①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 이내로 하</p>	<p>제13조 (근무시간)</p> <p>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p>	<p>[삭제추가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2020. 5. 26.

「복무규정」 개정(안)

<p>며, 평일은 09:00~18:00까지 근무까지 근무한다.</p> <p>② 법인은 직무의 성질, 교회의 각종 행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업, 종업 시각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다.</p>	<p>휴무일로 한다.</p> <p>②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p> <p>③ 1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으로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직원이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무시간으로 본다.</p> <p>⑤ 법인은 직무의 성질, 교회의 각종 행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업, 종업 시각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다.</p>	<p>개정 반영</p> <p>⇒ 제1항~제4항 변경 및 추가</p> <p>⇒ 제2항은 제5항으로 변경</p>
<p>신설</p>	<p>제13조의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p> <p>① 법인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p> <p>④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p> <p>⑤ 법인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p>	<p>[신설]</p> <p>■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무시간단축)</p> <p>2019. 8. 27. 개정반영</p>

복무규정 개정(안)

	<p>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법인은 직원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p> <p>⑦ 직원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신설</p>	<p>제13조의 2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중 근무조건 등)</p> <p>① 법인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무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무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시간을 포함한다)은 법인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p> <p>③ 법인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p> <p>④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9. 8. 27. 개정반영
<p>신설</p>	<p>제13조의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p> <p>① 법인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2019. 8. 27. 개정반영

복무규정 개정(안)

	<p>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이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p> <p>④ 근무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법인은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법인은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무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p>	
<p>신설</p>	<p>제13조의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은 근무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무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무조건(근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중 근로조건 등) <p>2019. 8. 27. 개정 반영</p>

「복무규정」 개정(안)

	<p>무시간 단축 후 근무시간을 포함한다)은 법인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p> <p>③ 법인은 근무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p> <p>④ 근무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p>	
<p>제15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제15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p> <p>①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② 연장 근무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 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p> <p>③ 연장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p>⑤ 법인은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p> <p>⑥ 법인은 직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p>	<p>[변경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2021. 1. 5. 개정 반영 ■ 같은 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2018. 3. 20. 개정 반영 <p>⇒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 참조</p>

복무규정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5조의 1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의 제한)</p> <p>① 법인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시키려면 그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법인은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p>③ 법인은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직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p>2010. 6. 4. 개정반영</p>
<p>제2장 제3절 휴일 및 휴가</p>	<p>(좌동)</p>	
<p>제23조 (휴일)</p> <p>① 다음은 유급휴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요일 (겨주휴무토요일 포함)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기타 정부에서 정한 임시휴일 또는 가톨릭교회에서 정한 휴일 <p>② 휴일이 겹쳤을 때에는 당일만 휴일로 한다.</p>	<p>제23조 (휴일)</p> <p>① 다음은 유급휴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요일(겨주휴무토요일 포함)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5. 기타 정부에서 정한 임시휴일 또는 가톨릭교회에서 정한 휴일 <p>② 변동없음.</p>	<p>[삭제변경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1호 무급토요근무제 도입으로 삭제 ➔ 제1항 4호 신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2018. 3. 20. 개정 반영 ➔ 현행 4호-5호 순연
<p>제25조 (연차휴가)</p> <p>① 법인은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② 법인은 계속근무연수가 1년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p>	<p>제25조 (연차휴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변동없음. ② 변동없음. ③ 변동없음. ④ 변동없음. ⑤ 변동없음. 	<p>[변경추가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2020. 3. 31. 개정반영 ➔ 제6항: 기존 제3항 삭제를 반영하여 용어 변경

「복무규정」 개정(안)

<p>급휴가를 주어야한다.</p> <p>③ 삭제</p> <p>④ 법인은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p> <p>⑤ 법인은 <u>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⑥ <u>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직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p>⑦ <u>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u> 다만, 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연차휴가는 반일로도 사용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직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p>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변동없음.</p>	<p>⇒ 제7항 변경: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를 추가</p>
<p>신설</p>	<p>제25조의 1 (연차휴가의 사용)</p> <p>① 법인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사용촉진 조치”라 한다)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법인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p>2020. 3. 31. 개정 반영</p>

「복무규정」 개정(안)

	<p>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법인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법인이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p> <p>② 법인이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p> <p>1. 최초 1년의 근무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법인이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법인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법인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무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p> <p>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법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무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법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무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25조의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법인은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무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반영
<p>제28조 (배우자출산 휴가)</p> <p>① 법인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p>	<p>제28조 (배우자 출산휴가)</p> <p>① 법인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p>	<p>[변경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p>2019. 8. 27. 개정 반영</p>

「복무규정」 개정(안)

<p>출산한 날부터 <u>30일</u>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p>	<p>으로 한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p> <p>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p> <p>⑤ 법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제1항 5일→10일</p> <p>⇒ 제3항 20일→90일</p> <p>⇒ 제4항과 제5항 추가</p>
<p>제30조 (임산부 보호 및 육아시간)</p> <p>① 법인은 여성직원에게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전산후휴가, 유산 등에 따른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②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p>	<p>제30조 (임산부 보호 및 육아시간)</p> <p>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p> <p>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p>[변경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와 같은 법 제75조(육아시간) 반영하여, 임산부 보호내용을 상세히 규정 ⇒ 현행 제2항→제10항으로 변경

「복무규정」 개정(안)

	<p>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p> <p>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p> <p>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p> <p>⑤ 법인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p> <p>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시킨다.</p> <p>⑦ 법인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p> <p>⑧ 법인은 제7항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p> <p>⑨ 법인은 임신 중인 여성직원이 1일 소정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⑩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p>	
<p>신설</p>	<p>제30조의 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p> <p>① 법인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p>	<p>[신설]</p> <p>■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반영</p>

복무규정 개정(안)

	<p>용한다.</p> <p>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제31조의 1 (가족돌봄휴가)</p> <p>① 법인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 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직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5항이 적용된다. ③ 법인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p>2019. 8. 27./2020. 9. 8 개정 반영</p>

「복무규정」 개정(안)

	<p>④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p> <p>⑤ 법인은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2장 제4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체계 변경 → 기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을 제4절로 신설
<p>제38조의1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제38조의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제38조의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8조의4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p>	<p>제38조의1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제38조의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제38조의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8조의4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p>	
<p>신설</p>	<p>제2장 제5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등</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등을 제5절로 신설
<p>신설</p>	<p>제3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법인 대표, 임원 또는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반영
<p>신설</p>	<p>제40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법원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 반영

「복무규정」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41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 반영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4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76

복무규정 개정(안)

	<p>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법인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법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법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법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⑥ 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p> <p>2021. 4. 13. 개정반영</p>
<p>제2장 제4절 출장, 사무인계, 복리후생</p>	<p>제2장 제6절 출장, 사무인계, 복리후생</p>	

「복무규정」 개정(안)

제39조 (출장 등) 제40조 (여비) 제41조 (사무인계서) 제42조 (회계사무 등 인계) 제43조 (사무인계절차) 제44조 (복리후생)	제43조 (출장 등) 제44조 (여비) 제45조 (사무인계서) 제46조 (회계사무 등 인계) 제47조 (사무인계절차) 제48조 (복리후생)	[변경] ■ 제4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 제5절 직장 내 괴롭힘행위의 금지 등 추가 ➔ 기존 4절~제6절로 내용 변경없이 절과 조 번호가 순연
제3장 교육·제안제도	(좌동)	
제45조 (교육훈련) 제46조 (제안제도)	제49조 (교육훈련) 제50조 (제안제도)	[변경] ■ 제4절과 제5절의 추가로 조번호 순연
제4장 안전·보건·재해보상	(좌동)	
제47조 (안전 및 보건) 제48조 (재해보상)	제51조 (안전 및 보건) 제52조 (재해보상)	[변경] ■ 제4절과 제5절의 추가로 조번호 순연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1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1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1호 의안인 법인 「취업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2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재산처분 대상: 부동산

소재지	지목	규모	장부상 가액	비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602	대	165.00㎡ 지하 지상2층 주택 연면적 200.63㎡	102,050,000원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170-139	임야	109.00㎡	0,001,400원	
합 계			102,051,400원	-

시설명	분야 / 유형	시설장	종사자		이용인원		비고
			정규직	비정규직	실인원	연인원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김요지	5명	-	23명	약 2,300명	2021. 12. 13. 기준

시설 전경

시설 내부



1) 처분 사유:

가. 심한 건물노후화 등 열악한 상황

- ① 위 부동산은 나자로의집(이하 시설)으로 지난 1999년부터 운영해 온 지적장애인 시설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② 위 건물은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지난 1976년 건축되어 건물노후화(약 45년 경과)가 심하게 진행되었으며, 건물을 받치고 있는 중간 보가 없어 지상2층 슬라브 가운데부분이 휘어져 있는 바, 건물자체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워 무너질 염려가 있는 상황임.
- ③ 지난 2020년 6월경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시행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건물안전을 위해 사용제한이

「기본재산처분」(안)

라는 점검결과가 있었음.

※ 'D등급'이란: 주요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④ 이에, 이용장애인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건물전체에 미치는 하중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지상 2층 사용을 자제하는 등 시설운영을 관할구청과 협의하여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현 문제의 개선방안 검토

① 기존 건물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공사여건상 불리한 상황(비좁은 도로와 골목으로 공사기간과 공사비 증가), 공사기간 임시 이전 시설임차비용(임차보증금과 임차료)등 신축공사비용이 과다함.

② 매각 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최근 부동산값 급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장애인시설이라는 낙비현상 등으로 대체 부동산 매입 등이 어려운 상황임.

다. 공가(空家)인 본 법인소유 부동산(고척동물건)을 리모델링공사하여 시설을 이전하고, 그 후 시설을 매각하여 대출금 상환

- ① 현재 공가(空家)인 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며, 공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위 시설을 매각하고자 함.

- ② 다만, 위 시설을 매각하려고 해도 그 매각시점이 불특정한 경우로, 매각이후 공사를 하기에는 위 시설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우선 현금인 기본재산과 그 부족분은 신용대출(가톨릭회관 명동신협)을 받아 일단 리모델링공사비에 충당하고 추후에 위 시설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함.

※ 리모델링 공사비(추정)

합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공사 기간	비고
13억원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10억원	8~9개월 (설계 포함)	-

2. 기본재산처분 대상: 기본재산인 현금 (590,194,119원)

1) 처분 사유 :

가. 위 처분대상 부동산(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의 처분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장애인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비어있는 고척동물건을 노유자시설로 리모델링공사를 하고자 하며,

나. 이에 해당 리모델링공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위 기본재산인 현금을 사용하고자 함.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2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2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 법인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안) 승인 요청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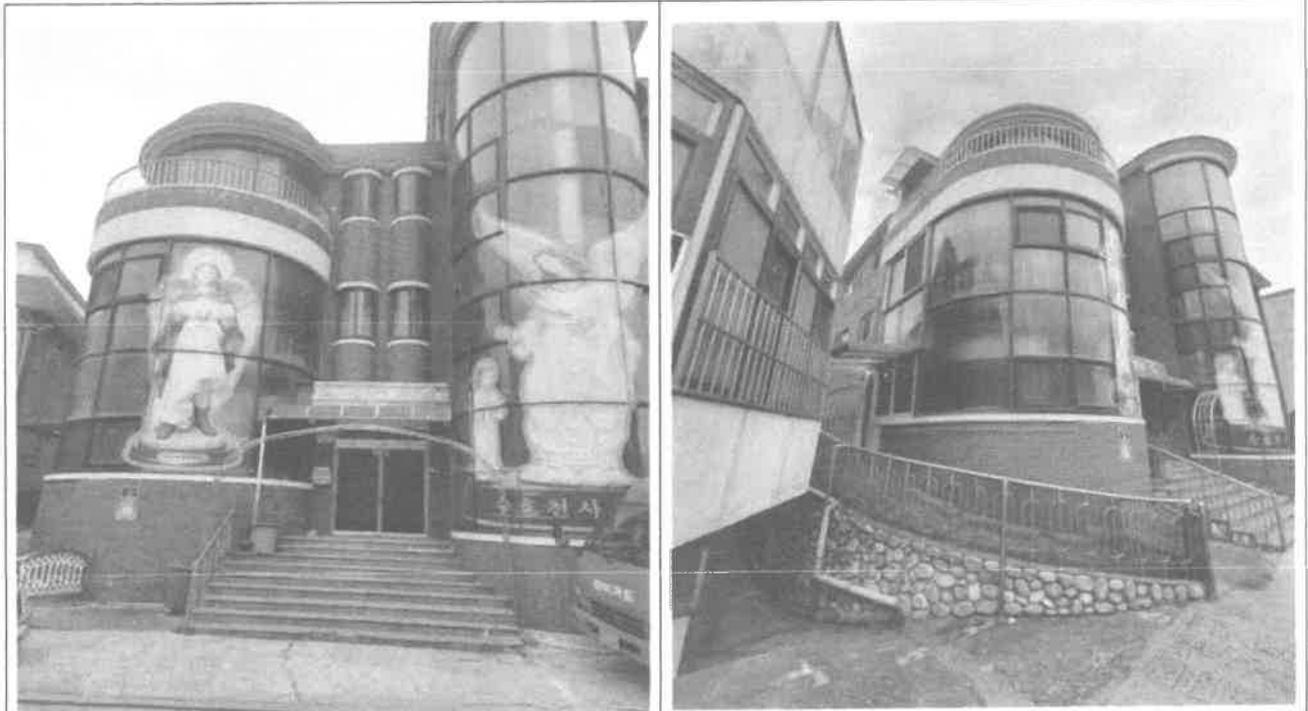
◎ 의장 황경원 : 제3호 의안인 법인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제3호 의안인 법인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안)

1. 리모델링공사 대상 부동산

소재지	지목	규모	장부상가액	현 이용현황	비고
서울시 구로구 ... 5	대	372.00㎡ 지하 지상3층 주택 연면적 659.60㎡원	비어 있음.	-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안)

2. 공사개요(각 층별 용도) :

구분	면적	실 명	비 고
지하 1층	179.62㎡	식당, 주방, 창고, 화장실(남, 여)	-
지상 1층	151.14㎡	상답실, 자원봉사실, 사무실, 장애인화장실(남, 여)	-
지상 2층	151.14㎡	훈련장애인프로그램실, 근로작업실, 창고, 화장실(남, 여)	-
지상 3층	146.02㎡	방(1~5), 주방/거실, 화장실(남, 여)	-
합계	627.92㎡		

3. 공사이유

- 1) 위 부동산은 보증자의 보증조건에 따라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미인가교육기관인 참좋은기초학교로 사용되었다가, 지속적인 후원금 감소 등으로 시설운영이 어려워, 지난 2021.5.30.자로 폐쇄하여 현재는 비어 있음.
- 2) 고척동물건은 건물이 축조된 지 28년(1993년)이며, 최근 실시한 건물정기안전점검에서도 B등급을 받은 바 있어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의 경우보다는 시설환경이 양호한 상황임.
- 3) 다만, 교구 내 건축전문기관인 가톨릭건축사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건물면적대비 건축관련법상 법정주차 4대가 필요하나, 현재는 최대 주차 2대 밖에 확보가 안된다고 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층 일부를 절단하여 필로피 형식으로 주차공간(2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함.
- 4)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법령상의 설치기준에 맞게 법령상 용도변경(교육 및 연구시설 → 노유자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예컨대,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리프트, 무장애시설,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비용으로 약 13억원이 소요된다고 함.
- 5) 이에 이미 기본재산처분승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을 현재 비어 있는 고척동물건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고자 함.

※ 리모델링 공사비(추정)

합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공사기간	비 고
13억원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10억원	8~9개월 (설계포함)	-

※ 자금확보계획

합 계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매각대금	현금인 기본재산	비고
약 13억~14억원	약 8억~9억원	약 5억원	-

[다자간 매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마친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3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3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3호 의안인 법인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4호 의안 : 법인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대출」 (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제4호 의안인 법인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대출」(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4호 의안인 법인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대출」(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대출」 (안)

1. 대출 목적

- 1) 기본재산처분 승인안건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근대신협법인 가톨릭명동신협(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4길 81)을 현재 공가(空家)인 고척동물건을 리모델링하여 이전을 하고자 함.
- 2) 다만, 리모델링공사비 재원확보차원에서 기본재산인 현금과 나자로의집을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 3) 현 건물의 위험성과 [가톨릭명동신협]들의 안전이 염려되어, 시설을 이전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으나, 건물매각 시기가 불특정한 관계로 일단 가톨릭명동신협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함.

2. 대출 조건

- 1) 대출업체명 : 가톨릭명동신협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105호)
- 2) 대출금액 : 최대 10억원 한도
- 3) 대출기간 : 1년(1년 단위 연장)
- 4) 대출금리 : 연 2.9%

3. 대출금 상환 방법 : 위 [가톨릭명동신협]들이 매각되는 대로 그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고자 함.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4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4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4호 의안인 법인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대출」(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5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 추진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 추진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 추진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시설명	소재지	임 면 사 항				비고
			면		임		
			발령일	성명	발령일	성명	
노인	[직영] 상계동성당 데이케어센터	서울시 노원구	2021. 12. 19.	유 ○ ○ ○	2021. 12. 20.	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시설장의 개인사정(건강상의 사유)으로 인한 사직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시설인사위원회 선정 심의 완료 (개최일 2021. 12. 9.)

※ 붙임1: 인사기록카드 40면~41면 참조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5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5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 추진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더불어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 전임 유 ○ ○ 시설장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인사와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

겠다는 인사를 전하다. 신입 홍익 시설장은 향후 시설 운영에 만전(萬全)을 기할 것과 법인사무국에서는 신입 시설장이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다.

■ 제6호 의안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권

◎ 의장 황경원 : 제6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제6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외 산하 직영·수탁시설은 총51개 시설로서 해당 의안 내용은 사회복지팀의 각 복지 담당(관)직원의 1차 검토와 법인 재무·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섭 이사님과 이영규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음을 안내드리며 순차적으로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산하 직영수탁 4개 시설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회장 Fr. 조용철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차 임시이사회 자료집 참조

[참고] 법인 & 총51개 시설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4개 시설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10개 시설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21개 시설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법인 및 16개 시설

◎ 부회장 Fr. 조용철 : 먼저,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4개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쪽번호
			2021년 예산(A)	2021년 1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21년 예산(A)	2021년 1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노인 (2개)	직영	신림성모성당터	618,780	581,239	-37,541	-6.1	618,780	581,239	-37,541	-6.1	3
	직영	해화동성당터	603,973	532,104	-71,869	-11.9	603,973	532,104	-71,869	-11.9	5
장애인 (2개)	직영	서로함께공동생활가정	86,634	89,934	3,300	3.8	86,634	89,934	3,300	3.8	6
	직영	소라네공동생활가정	81,400	80,575	-825	-1.0	81,400	80,575	-825	-1.0	7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 부회장 Fr.조용철 : 이어서,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10개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쪽번호
			2021년 1차 추경예산(A)	2021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21년 1차 추경예산(A)	2021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영유아 (1개) 노인 (5개)	직영	베들레헴어린이집	301,805	321,421	19,616	6.5	301,805	321,421	19,616	6.5	10
	직영	강일성모노인요양원	3,047,710	3,056,862	9,152	0.3	3,047,710	3,056,862	9,152	0.3	11
	직영	고척동성당 데이케어센터	462,000	462,000	0	0.0	462,000	462,000	0	0.0	13
	직영	시흥4동성당 데이케어센터	424,744	352,034	-72,710	-17.1	424,744	352,034	-72,710	-17.1	14
	직영	신당동성당 데이케어센터	492,271	513,061	20,790	4.2	492,271	513,061	20,790	4.2	16
	직영	행운동성당 데이케어센터	438,423	429,043	-9,380	-2.1	438,423	429,043	-9,380	-2.1	17
장애인 (2개)	직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78,567	79,374	807	1.0	78,567	79,374	807	1.0	18
	직영	연희네공동생활가정	66,699	63,983	-2,716	-4.1	66,699	63,983	-2,716	-4.1	19
여성 (1개)	직영	벗들의집	463,106	445,880	-17,226	-3.7	463,106	445,880	-17,226	-3.7	20
의료 (1개)	직영	요셉의원	2,409,659	2,621,829	212,170	8.8	2,409,659	2,621,829	212,170	8.8	21

※ 고척동성당데이케어센터: 세입·세출 예산 총액 변동 없음. (관항목간 예산 변경)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 부회장 Fr.조용철 : 다음은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21개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쪽번호
			2021년 2차 추경예산(A)	2021년 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21년 2차 추경예산(A)	2021년 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종합 (5개)	수탁	동작종합사회복지관	1,802,015	1,793,259	-8,756	-0.5	1,802,015	1,793,259	-8,756	-0.5	25
	수탁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외부시설	3,957,398	3,949,342	-8,056	-0.2	3,957,398	3,949,342	-8,056	-0.2	26
	수탁	유락종합사회복지관	4,015,000	4,004,000	-11,000	-0.3	4,015,000	4,004,000	-11,000	-0.3	29
	수탁	중곡종합사회복지관	2,122,355	2,076,535	-45,820	-2.2	2,122,355	2,076,535	-45,820	-2.2	30
	수탁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부시설	3,914,112	3,899,505	-14,607	-0.4	3,914,112	3,899,505	-14,607	-0.4	31
아동 (1개)	직영	성가정입양원	1,964,216	2,171,446	207,230	10.6	1,964,216	2,171,446	207,230	10.6	35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쪽번호
			2021년 2차 추경예산(A)	2021년 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21년 2차 추경예산(A)	2021년 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노인 (3개)	수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3,848,926	3,864,691	15,765	0.4	3,848,926	3,864,691	15,765	0.4	36
	직영	구과발성당 네이케어센터	533,594	580,163	46,569	8.7	533,594	580,163	46,569	8.7	37
	직영	왕십리성당 네이케어센터	534,998	548,132	13,134	2.5	534,998	548,132	13,134	2.5	38
장애인 (11개)	직영	다사랑공동생활가정	72,395	72,570	175	0.2	72,395	72,570	175	0.2	39
	직영	두레네공동생활가정	74,091	73,411	-680	-0.9	74,091	73,411	-680	-0.9	40
	직영	부치아공동생활가정	70,092	70,147	55	0.1	70,092	70,147	55	0.1	41
	직영	비둘기주간보호시설	239,761	240,515	754	0.3	239,761	240,515	754	0.3	42
	수탁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1,901,138	1,874,199	-26,939	-1.4	1,901,138	1,874,199	-26,939	-1.4	43
	직영	신망애공동생활가정	99,512	99,527	15	0.0	99,512	99,527	15	0.0	44
	직영	신망애의집 단기거주시설	537,895	521,480	-16,415	-3.1	537,895	521,480	-16,415	-3.1	45
	수탁	한우리보호작업장	1,525,700	1,422,000	-103,700	-6.8	1,525,700	1,422,000	-103,700	-6.8	46
	수탁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외부설기	4,611,264	4,538,016	-73,248	-1.6	4,611,264	4,538,016	-73,248	-1.6	47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1호	65,721	62,079	-3,642	-5.5	65,721	62,079	-3,642	-5.5	50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2호	94,787	94,653	-134	-0.1	94,787	94,653	-134	-0.1	51
여성 (1개)	직영	화해의집 쉼자리	534,544	524,297	-10,247	-1.9	534,544	524,297	-10,247	-1.9	52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 부회장 Fr. 조용철 : 마지막으로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16개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법인 및 산하 시설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쪽번호
			2021년 2차 추경예산(A)	2021년 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21년 2차 추경예산(A)	2021년 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법	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8,392,197	8,574,938	182,741	2.2	8,392,197	8,574,938	182,741	2.2	70
영유아 (1개)	수탁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1,497,079	1,896,977	399,898	26.7	1,497,079	1,896,977	399,898	26.7	71
아동 (1개)	직영	우리들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278,915	303,039	24,124	8.6	278,915	303,039	24,124	8.6	72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21년 2차 추경예산(A)	2021년 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21년 2차 추경예산(A)	2021년 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노 인 (7개)	수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의 부 설 기 관	5,155,483	5,148,786	-6,697	-0.1	5,155,483	5,148,786	-6,697	-0.1	73
	수탁	동작데이케어센터	301,896	301,547	-349	-0.1	301,896	301,547	-349	-0.1	75
	직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의 부 설 기 관	3,320,456	3,290,000	-30,456	-0.9	3,320,456	3,290,000	-30,456	-0.9	76
	수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의 부 설 기 관	4,245,055	4,168,562	-76,493	-1.8	4,245,055	4,168,562	-76,493	-1.8	79
	수탁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의 부 설 기 관	3,535,526	3,537,109	1,583	0.0	3,535,526	3,537,109	1,583	0.0	81
	직영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	518,418	514,259	-4,159	-0.8	518,418	514,259	-4,159	-0.8	85
	직영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541,755	509,086	-32,669	-6.0	541,755	509,086	-32,669	-6.0	86
장애인 (13개)	직영	꿈손장애인단기보호센터	416,294	471,096	54,802	13.2	416,294	471,096	54,802	13.2	87
	직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443,601	454,903	11,302	2.5	443,601	454,903	11,302	2.5	88
	직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181,482	181,604	122	0.1	181,482	181,604	122	0.1	89
	직영	다 향 공 동 생 활 가 정	64,251	64,582	331	0.5	64,251	64,582	331	0.5	90
	직영	디 덤 자 리	2,251,270	2,246,156	-5,114	-0.2	2,251,270	2,246,156	-5,114	-0.2	91
	직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417,969	420,195	2,226	0.5	417,969	420,195	2,226	0.5	92
	직영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293,363	297,987	4,624	1.6	293,363	297,987	4,624	1.6	93
	직영	사 랑 손 주 간 보 호 센 터	243,465	241,100	-2,365	-1.0	243,465	241,100	-2,365	-1.0	94
	직영	사 랑 손 직 업 적 용 훈 련 시 설	520,366	512,113	-8,253	-1.6	520,366	512,113	-8,253	-1.6	95
	직영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80,417	79,914	-503	-0.6	80,417	79,914	-503	-0.6	96
	직영	햇 빛 자 리	324,229	314,437	-9,792	-3.0	324,229	314,437	-9,792	-3.0	97
	직영	할렘캘러의집 단기거주시설	447,626	534,963	87,337	19.5	447,626	534,963	87,337	19.5	98
	직영	할렘캘러의집 주간보호시설	254,049	241,605	-12,444	-4.9	254,049	241,605	-12,444	-4.9	99
여 성 (1개)	직영	마 음 자 리	923,856	872,810	-51,046	-5.5	923,856	872,810	-51,046	-5.5	100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6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6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자문해주신 심점섭 이사님(세무사)과 이영규 감사님(공인회계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6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1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7호 의안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2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제7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2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2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은 총70개(부설 포함) 시설로서 해당 의안 내용은 사회복지팀의 각 복지담당(관)직원의 1차 검토와 법인 재무·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섭 이사님과 이영규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음을 안내 드리며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자료 중 먼저 법인사무국의 2022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회장 Fr.조용철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차 임시이사회 자료집 참조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 70개 시설의 2022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쪽번호
			2021년 추경예산(A)	2022년 예산액(B)	증감(B-A)		2021년 추경예산(A)	2022년 예산액(B)	증감(B-A)		
					금액	%			금액	%	
법	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8,671,989	7,918,664	-753,325	-8.7	8,671,989	7,918,664	-753,325	-8.7	81
종합 (7개)	수탁	동작종합사회복지관	1,793,259	1,803,785	10,526	0.6	1,793,259	1,803,785	10,526	0.6	85
	수탁	동촌7종합사회복지관 외 부설기관	2,732,790	2,538,495	-194,295	-7.1	2,732,790	2,538,495	-194,295	-7.1	89
	수탁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외 부설기관	3,949,342	3,842,100	-107,242	-2.7	3,949,342	3,842,100	-107,242	-2.7	99
	수탁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152,739	2,179,896	27,157	1.3	2,152,739	2,179,896	27,157	1.3	106
	수탁	유락종합사회복지관	4,004,000	3,984,000	-20,000	-0.5	4,004,000	3,984,000	-20,000	-0.5	110
	수탁	중곡종합사회복지관	2,076,535	2,217,028	140,493	6.8	2,076,535	2,217,028	140,493	6.8	114
	수탁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 부설기관	3,899,505	3,835,093	-64,412	-1.7	3,899,505	3,835,093	-64,412	-1.7	118
영아 (1개)	수탁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1,898,477	1,958,356	59,879	3.2	1,898,477	1,958,356	59,879	3.2	129
아동 (4개)	직영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31,540	136,233	4,693	3.6	131,540	136,233	4,693	3.6	132
	직영	셋별지역아동센터	194,418	179,174	-15,244	-7.8	194,418	179,174	-15,244	-7.8	135
	직영	성가정입양원	2,171,446	2,104,859	-66,587	-3.1	2,171,446	2,104,859	-66,587	-3.1	138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쪽번호
			2021년 추경예산(A)	2022년 예산액(B)	증감 (B-A)		2021년 추경예산(A)	2022년 예산액(B)	증감 (B-A)		
					금액	%			금액	%	
아동	직영	우리들의공부방 지역아동센터	303,039	248,426	-54,613	-18.0	303,039	248,426	-54,613	-18.0	142
노인 (20개)	수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관	5,114,675	4,962,377	-152,298	-3.0	5,114,675	4,962,377	-152,298	-3.0	146
	수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관	4,166,238	3,936,901	-229,337	-5.5	4,166,238	3,936,901	-229,337	-5.5	157
	직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3,028,000	2,830,000	-198,000	-6.5	3,028,000	2,830,000	-198,000	-6.5	162
	수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관	4,150,770	3,915,333	-235,437	-5.7	4,150,770	3,915,333	-235,437	-5.7	167
	직영	강일성모노인요양원	3,056,862	3,272,214	215,352	7.0	3,056,862	3,272,214	215,352	7.0	175
	수탁	양천에르신요양센터 부설기관	3,606,960	3,558,839	-48,121	-1.3	3,606,960	3,558,839	-48,121	-1.3	180
	수탁	고덕양로원	2,041,358	2,350,826	309,468	15.2	2,041,358	2,350,826	309,468	15.2	197
	직영	갈현동성당 데이케어센터	466,000	479,000	13,000	2.8	466,000	479,000	13,000	2.8	201
	직영	고척동성당 데이케어센터	462,000	490,108	28,108	6.1	462,000	490,108	28,108	6.1	205
	직영	구파발성당 데이케어센터	580,163	545,856	-34,307	-5.9	580,163	545,856	-34,307	-5.9	213
	직영	금호동성당 데이케어센터	436,159	463,397	27,238	6.2	436,159	463,397	27,238	6.2	217
	직영	상계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03,905	521,511	17,606	3.5	503,905	521,511	17,606	3.5	221
	직영	시흥4동성당 데이케어센터	352,034	423,185	71,151	20.2	352,034	423,185	71,151	20.2	226
	직영	신당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13,061	501,713	-11,348	-2.2	513,061	501,713	-11,348	-2.2	230
	직영	신림성모성당 데이케어센터	581,239	587,239	6,000	1.0	581,239	587,239	6,000	1.0	235
	직영	왕십리성당 데이케어센터	548,132	548,130	-2	0.0	548,132	548,130	-2	0.0	239
	직영	천호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09,086	558,470	49,384	9.7	509,086	558,470	49,384	9.7	244
	직영	행운동성당 데이케어센터	429,043	435,439	6,396	1.5	429,043	435,439	6,396	1.5	248
	직영	혜화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32,104	558,807	26,703	5.0	532,104	558,807	26,703	5.0	252
	직영	화곡동성당 데이케어센터	637,835	612,307	-25,528	-4.0	637,835	612,307	-25,528	-4.0	260
장애인 (32개)	직영	꿈손장애 단기보호센터	472,510	519,865	47,355	10.0	472,510	519,865	47,355	10.0	265
	직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453,902	388,177	-65,725	-14.5	453,902	388,177	-65,725	-14.5	269
	직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181,733	183,309	1,576	0.9	181,733	183,309	1,576	0.9	272
	직영	다사랑공동생활가정	72,570	82,492	9,922	13.7	72,570	82,492	9,922	13.7	275
	직영	다향공동생활가정	64,582	66,193	1,611	2.5	64,582	66,193	1,611	2.5	278
	직영	두레네공동생활가정	73,411	79,279	5,868	8.0	73,411	79,279	5,868	8.0	281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쪽 번 호
			2021년 추경예산(A)	2022년 예산액(B)	증감 (B-A)		2021년 추경예산(A)	2022년 예산액(B)	증감 (B-A)		
					금액	%			금액	%	
장애인	직영	디 답 자 리	2,282,998	2,375,499	92,501	4.1	2,282,998	2,375,499	92,501	4.1	284
	직영	루치아공동생활가정	70,147	74,469	4,322	6.2	70,147	74,469	4,322	6.2	287
	직영	마로니아공동생활가정	120,579	124,500	3,921	3.3	120,579	124,500	3,921	3.3	290
	직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425,327	389,970	-35,357	-8.3	425,327	389,970	-35,357	-8.3	293
	직영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297,343	282,748	-14,595	-4.9	297,343	282,748	-14,595	-4.9	297
	직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79,374	81,882	2,508	3.2	79,374	81,882	2,508	3.2	301
	직영	비둘기주간보호시설	240,515	265,183	24,668	10.3	240,515	265,183	24,668	10.3	304
	직영	비둘기작업적응훈련센터	454,068	422,271	-31,797	-7.0	454,068	422,271	-31,797	-7.0	308
	직영	사랑손주간보호센터	240,080	281,500	41,420	17.3	240,080	281,500	41,420	17.3	312
	직영	사랑손작업적응훈련시설	500,359	492,045	-8,314	-1.7	500,359	492,045	-8,314	-1.7	315
	직영	서로함께공동생활가정	89,934	106,810	16,876	18.8	89,934	106,810	16,876	18.8	318
	수탁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1,874,199	1,973,341	99,142	5.3	1,874,199	1,973,341	99,142	5.3	321
	직영	성빈센트환경마을	1,541,380	1,552,290	10,910	0.7	1,541,380	1,552,290	10,910	0.7	327
	직영	성지보호작업장	473,754	419,594	-54,160	-11.4	473,754	419,594	-54,160	-11.4	330
	직영	소라내공동생활가정	80,575	78,432	-2,143	-2.7	80,575	78,432	-2,143	-2.7	333
	직영	신망애공동생활가정	99,527	106,141	6,614	6.6	99,527	106,141	6,614	6.6	336
	직영	신망애의집단기거주시설	521,480	666,582	145,102	27.8	521,480	666,582	145,102	27.8	339
	직영	연희내공동생활가정	63,983	64,550	567	0.9	63,983	64,550	567	0.9	342
	직영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80,134	78,307	-1,827	-2.3	80,134	78,307	-1,827	-2.3	345
	수탁	한우리보호작업장	1,422,000	1,576,500	154,500	10.9	1,422,000	1,576,500	154,500	10.9	348
	수탁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부 설 기 관	4,538,016	4,234,489	-303,527	-6.7	4,538,016	4,234,489	-303,527	-6.7	351
	직영	햇 빛 자 리	314,437	318,368	3,931	1.3	314,437	318,368	3,931	1.3	362
	직영	헬 렌 켈 러 의 집 공동생활가정 1호	62,079	65,706	3,627	5.8	62,079	65,706	3,627	5.8	366
	직영	헬 렌 켈 러 의 집 공동생활가정 2호	94,653	97,217	2,564	2.7	94,653	97,217	2,564	2.7	369
	직영	헬 렌 켈 러 의 집 단기 거주 시설	539,317	661,750	122,433	22.7	539,317	661,750	122,433	22.7	373
	직영	헬 렌 켈 러 의 집 주간 보호 시설	248,313	268,749	20,436	8.2	248,313	268,749	20,436	8.2	377
	여성 (4개)	직영	마 음 자 리	872,810	1,047,979	175,169	20.1	872,810	1,047,979	175,169	20.1
직영		벳 들 의 집	445,880	485,033	39,153	8.8	445,880	485,033	39,153	8.8	387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쪽 번호
			2021년 추경예산(A)	2022년 예산액(B)	증감 (B-A)		2021년 추경예산(A)	2022년 예산액(B)	증감 (B-A)		
					금액	%			금액	%	
여성	직영	사랑의 집	261,181	338,893	77,712	29.8	261,181	338,893	77,712	29.8	390
		직영 화해의 집 설치	524,297	525,646	1,349	0.3	524,297	525,646	1,349	0.3	394
노년 (1개)	직영	우리 집 공동체	111,241	124,941	13,700	12.3	111,241	124,941	13,700	12.3	397
의료 (1개)	직영	요셉의원	2,621,829	2,673,816	51,987	1.9	2,621,829	2,673,816	51,987	1.9	401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7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7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7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2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8호 의안 :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2014년 및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신청(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제8호 의안인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2014년 및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신청(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8호 의안인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2014년 및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신청(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자립 지원		
분	야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 대출 사업		
사	업	기간	2020년까지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정 체결 후 사업 진행 (2014년~2020년) 2021년부터 신규 대출 사업 중단	
세	부	세	항	■ 서민금융진흥원 2014년,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신청 승인 요청

사업명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자립 지원

1. 2014년 지원금 기간 연장 신청

(2021. 11. 25. 기준)

지원연도	지원기간 만료일	지원금(A)	기상환 지원금(B)	미상환 지원금(A-B)
2014	2021. 12. 16.	200,000,000원	193,003,986원	6,996,014원

※ 대출 연장은 총 3회 가능하며 2014년 대출자(조○회)의 경우 질병(뇌출혈)으로 폐업한 상태로 2019년 1회 연장하였고 이번에 2회 연장 승인을 요청함

2. 2016년 지원금 기간 연장 신청

지원연도	지원기간 만료일	지원금(A)	기상환 지원금(B)	미상환 지원금(A-B)
2016	2022. 02. 01	140,000,000원	119,096,835원	20,903,165원

지원금 연장 신청 대상자

성명	김○○	김○○	유○○	노○○
대출잔액	1,373,608원	17,556,978원	1,184,723원	787,856원
대출만료일	2021. 08. 01.	2021. 08. 01.	2021. 08. 01.	2022. 02. 01.
비고	코로나19로 폐업	사기 사건으로 폐업 (형사폐소, 민사승소)	코로나19로 일시적 자금난	정상 상환 중

[다자간 이사회 단계 대화방을 통하여, 상임이사가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8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8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8호 의안인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2014년 및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신청(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

◎ 의장 황경원 :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보고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

법인 산하 수탁시설 관련 보고 건

■ 시설 현황

시 설 명 (시설장 성명)	상계방과후어린이집-상계종합사회복지관 부설 (Fr. 김원호)	이 용 인 원 종 사 자	19명 2명
관 할 지 자 체	노원구청	시 설 규 모	14㎡
소 재 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15 나길 25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내 3층	시 설 소 유	노원구
시 설 신 고 일	2002. 7. 18.	법 인 전 입 금	연 1,800,000원
운 영 현 황	<p>[운영사업]</p> <p>1. 방과후 아동 보호 및 간식 지도 2. 아동교육프로그램 : 학습지도, 독서지도, 안전교육, 영어교육, 특별프로그램 등 3. 특별행사 : 현장학습, 캠프, 생일 잔치 등</p> <p>[운영실적]</p> <p>1. 월 평균 19명 아동 이용 (2021.1.~현재)</p>		

■ 추진 배경

1. 방과후 아동에 대한 정책 방향의 변화

1) 방과후 아동에 대한 보살핌이 방과후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 돌봄교실, 키움센터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상계방과후어린이집에 대한 대안 마련(정부의 지원금 증액, 보육료 인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2)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확대로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부담해야하는 상계방과후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안고 여타의 무상 돌봄 서비스 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2. 상계방과후어린이집의 상황

1) 매년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육료와 정부 지원금 동결로 재정 부족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2) 이에 복지관에서는 사업비로 상계방과후어린이집을 지원함과 동시에 외부 지원사업 신청, 보육료 결연후원, 복지관과 연계한 사례관리, 상담 및 치료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양질의 보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주변에 키움센터 1개소, 초등학교 돌봄교실 2개 반 확충이 예정되어 있고, 보육료 부담, 진학 등의 이유로 4명의 아동이 2022년 퇴소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원을 채우면서 운영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됨. 이 경우 이용 아동이 16명 이하가 되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됨.

▶ 진행 과정

1.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해 재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관의 사업비 지원, 외부 자원 연결, 복지관의 사례관리, 상담 및 치료 등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노력함.
2. 2021. 8. 경 4명의 아동이 퇴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복지관 관장과 부장, 상계방과후어린이집 원장이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에 관해 논의함.
3. 논의 한 결과 향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폐업 절차 확인, 아동 전원 조치, 보조교사 조치 관련 진행하기로 함.
4. 노원구청과 협의하여 2021. 10. 중으로 폐업하기로 협의함.
5. 2021. 10. 31.자로 폐원 완료함.

▶ 폐업 사유

1. 4명의 아동이 진학, 보육료 부담 등을 이유로 퇴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보조금 지원 최소 인원인 16명을 채우지 못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이 예측됨. 이런 경우 아동의 보육료 수입만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고 운영이 불가능함.
2. 상계방과후어린이집 원장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유, 논의하고 폐원을 결정하게 됨.

▶ 폐원 결과

1. 상계방과후어린이집 폐지 신고 완료: 2021. 10. 31.
2. 이용 아동 18명 전원조치 완료: 12명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방과후교실로 전원 조치, 6명은 가정보육.
3. 원장 및 보조교사 2021. 10. 31. 일자로 사직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상임이사가 보고 및 기타 사항보고를 마침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보고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 의장 황경원 : 보고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임원분들께 질의 유무를 묻고 특이 사항이 없다면 법인사무국 팀별 업무보고(진행 및 예정 업무) 건은 이하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무국 사회복지팀, 교육·기획팀, 나눔·홍보팀, 재무·행정팀,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다자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자료 공유를 완료하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본 회 법인사무국 진행 및 예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어서 올 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위중 상황에서도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위기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법인사무국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더불어 2022년에도 지금과 같이 업무에 만전(萬全)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다.

또한, 산하 직영·수탁시설에서는 각 복지영역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법인사무국의 안내(지침)에 기민하게 함께 해주시고 지역 사회 내에서도 지자체 및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용인(거주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특별히 당부하다.

또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회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애써주신 직영·수탁시설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산하 직영·수탁시설에 주님의 은총을 청하며 기도드리겠다고 침언하다.

의장은 마지막으로 임원분들께 2021년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안 심의의결을 통해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의 관리·운영에 큰 도움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원분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겠다고 인사말씀을 전하다.

의장은 금번 2021년 제4차 임시이사회(총193차)에 상정된 총8개 의안, [제1호 의안] 법인 「취업규칙」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2호 의안]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4호 의안] 법인 「고척동물건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대출」(안) 승인 요청의 건, [제5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 추진 요청의 건, [제6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7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2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8호 의안]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2014년 및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신청(안)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임원진의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기타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법인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예정일 안내】

- 정기이사회 개최 예정일 : 2월 18일(금) 16:00
-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예정일: 5월 18일(수) 16:00
-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예정일: 10월 19일(수) 16:00
-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예정일: 12월 21일(수) 16:00

※ 특이사항 발생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 사전안내 예정.

상기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여 보관하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황



상임이사

김



이 사

오 해



이 사

심 점



이 사

전 재



이 사

김



이 사

정 태



이 사

김 영



감 사

김 한



감 사

이 영

